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12. 30.(목) 11:00

제2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
(경제환경국 소관)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(안)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166호

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1. 12. 22. (수정안 12. 29.)

라. 회부일자 : 2021. 12. 23. (수정안 12. 29.)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(안)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3.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[총괄]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최종예산	기 정 액					제3회추경(안) (명시이월)
		소 계	당초예산	제1회추경	제2회추경	간주처리	
계	707,717,384	707,717,384	545,733,305	12,416,344	51,465,113	98,102,622	- <35,762,867>
일반회계	695,665,460	695,665,460	532,501,288	12,416,344	54,124,013	96,623,815	- <35,262,867>
특별회계	12,051,924	12,051,924	13,232,017	-	-2,658,900	1,478,807	-
의료급여	655,976	655,976	503,592	-	76,544	75,840	-
주민소득	642,392	642,392	294,400	-	347,992	-	-
주 차 장	10,753,556	10,753,556	12,434,025	-	-3,083,436	1,402,967	- <500,000>

※ 세출규모 변동은 없음

4. 명시이월 사업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 서 명	세 부 사 업 명	2021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
			계	교부세(금)	국시비 보조금	구 비
합 계 : 3개 부서 / 9건		12,214,876	**7,058,476**	**1,194,000**	**4,311,695**	**1,552,781**
지 역 경 제 과 (4건/2,899,365천원)	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	4,039,294	**1,174,294**	1,110,000	64,294	
	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	400,000	**400,000**		400,000	
	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	238,400	**237,000**			237,000
	남문시장 고객편의 시설 신축	1,416,000	**1,088,071**			1,088,071
도 시 재 생 과 (4건/4,066,311천원)	생활밀착형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	850,000	**1,169**		1,169	
	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	460,000	**409,000**		400,000	9,000
	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	3,962,420	**3,646,342**		3,437,432	208,910
	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	60,000	**9,800**			9,800
청 소 행 정 과 (1건/92,800천원)	환경미화원 후생복지	788,762	**92,800**	84,000	8,800	

5. 검토의견

○ 경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은 3개 부서 9건 70억 5,847만 6천원으로

- 지역경제과 : 4건 2,899,365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2021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	비고 (사유)
			계	특별교부세(금)	보조금	구비	
합 계 (4건)		6,093,694	2,899,365	1,110,000	464,294	1,325,071	
1	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	4,039,294	**1,174,294**	1,110,000	64,294		**[집행시기 미도래]** e서울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및 할인보전금 예산 이월
2	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	400,000	**400,000**		400,000		**[연도 내 지출불가]** 코로나19 확산방지를 피하기 위하여 올해 업체는 선정하되, 명시 이월하여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함
3	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	238,400	**237,000**			237,000	**[연도 내 집행 불가]**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해체공사 지연 등 설계용역이 11.15. 준공됨에 따라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
4	남문시장 고객편의 시설 신축	1,416,000	**1,088,071**			1,088,071	**[연도 내 집행 불가]** 시장관련 시설 임시이전 및 기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후 8월 착공(공정률 40%), `22.6월 준공 예정

- 금천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등 4건 28억 9,936만 5천원이 이월되며
-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 발행 사업 11억 7,429만원은 발행수수료 및 보전금 예산을 이월하며
-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4억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명시이월하여 2022년 추진하고자 함.
-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 2억 3,700만원은 공사비의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하며
- 남문시장 고객편의 시설 신축 사업은 2022년 6월 준공 및 공사비 집행 예정으로 이월

- 도시재생과 : 4건 4,066,311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업명	2021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	비고 (사유)
			계	특별교부세(금)	보조금	구비	
합 계 (4건)		5,332,420	4,066,311	0	3,838,601	227,710	
1	생활밀착형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	850,000	**1,169**		1,169		**[집행시기 미도래]** 국고보조 정산 회계법인 검증 수수료 `22. 1월 집행예정
2	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	460,000	**409,000**		400,000	9,000	**[연도 내 지출불가]** `21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미시행으로 `22년도 이월
3	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	3,962,420	**3,646,342**		3,437,432	208,910	**[연도 내 집행 불가]** 국토부 실행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
4	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	60,000	**9,800**			9,800	**[연도 내 집행 불가]**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거점공간 조성, 현장센터 조성 지연으로 당해연도내 공공요금 지출 불가

· 독산 우시장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등 4건 40억 6,631만원이 이월되며

· 코로나19로 사업 미시행, 실행 계획 변경 등으로 연도내 지출 불가

- 청소행정과 : 1건 92,8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번	사 업 명	2021 예산액	다음연도 이월액				비 고 (사유)
			계	특 별 교부세(금)	보조금	구 비	
합 계 (1건)		788,762	92,800	84,000	8,800	0	
1	환경미화원 후생복지	788,762	**92,800**	84,000	8,800		**[연도 내 지출불가]** `특별조정교부금이 `21. 12. 1. 교부되어 연도 내 방한복 구매 계약이 어렵고, 2022년 간식비 선집행 불가하여 해당 예산을 이월

·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사업 1건 9,280만원은 서울시 교부금이 12월 결정되어 연도 내 지급 불가하여 이월함.

○ 경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련 법령

▢ **「지방자치법」** 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8092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

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▢ **「지방재정법」** [시행 2021. 12. 21.] [법률 제18585호, 2021. 12. 21., 타법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[전문개정 2011.8.4.]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 [전문개정 2011.8.4.]